

집현전(集賢殿)의 조직과 운영 체계*

구 만 옥**

[초 록]

세종대의 당면 과제는 유교적 ‘예악문물’(禮樂文物)의 정비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수행하고 국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했다. 이에 세종은 학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이 경연(經筵)과 집현전(集賢殿)이었다. 양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종의 재위 기간 동안 유교적 의례(儀禮)와 제도를 연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다. 이전의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정비하고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젊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 — 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제어: 집현전(集賢殿), 세종(世宗), 경연(經筵), 장기근속, 이차천전(以次遷轉)
Jiphyeonjeon (Hall of Worthies), King Sejong, Gyeongyeon (Royal Lecture),
Long-Term Service, Promotion by Seniority

은 문신들을 선발해서 경사(經史)를 강론하게 함으로써 왕에게 자문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1420년에 집현전에 녹관(祿官)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집현전의 정원은 10명에서 32명, 20명으로 때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경연과 서연(書筵)을 담당케 하고, 문한(文翰)의 일을 전담시키는 관례는 유지되었다.

집현전 관리의 인사 규정은 ‘장기근속’과 ‘이차천전’(以次遷轉)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집현전 관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관서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한 목적이 오로지 문한(文翰)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집현전 관리들에게 종신토록 학술 활동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집현전 관리들은 관직에 임명된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상위 관직으로 승진하였다. 이와 같은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은 집현전의 오래된 관례로 간주되었다. 집현전 관리들은 관직 임명과 나이의 순서를 준수함으로써 ‘유림의 선비’[儒林之士]로서 선후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현전과 경연은 세종대 최고의 학문 연구 기관이 되었다. 세종과 신료들은 경연에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과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역사서,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독파했다. 본문만 읽는 단순한 강독이 아니라 주석까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명실상부한 학문 연구였다. 경연에서 쌓은 학문적 성과는 세종대 예악(禮樂)을 제정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요컨대 집현전은 문과(文科)에 합격한 문반 관료 가운데 연소(年少)하고 재행(才行)이 있는 인물들을 선발하여, 다년간의 재직 기간을 통해 경사(經史)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여러 학술 방면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자, 국왕과 조정의 필요에 따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하는 기관이었다.

1. 머리말

지난 2020년은 집현전 창립 600주년인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몇 차례 개최되었다. 진단학회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2020.11.6)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 [조선시대 학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현’의 의미: 집현전 600주년을 기념하여](2020.11.27.~28)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학술대회에서 만 <기조 강연>을 포함하여 문헌학, 국어학, 한문학, 역사학, 음악사, 미술사, 과학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25편의 논고가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몇 편의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¹⁾

주목되는 것은 이상의 발표 논고 가운데 정작 집현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모두 해명되었기에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대에 설립된 집현전의 설치 및 폐지 과정과 집현전의 주요 기능, 집현전의 고제(古制) 연구, 집현전의 학풍과 집현전 학사들의 학문 활동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
- 1) 魯耀翰(2020), 「세종대의 주해본 편찬 과정에 대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135, 震檀學會; 金承宇(2020), 「세종 시대 景幾體歌系 樂章 제작의 양상 — 집현전 관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震檀學報』 135, 震檀學會; 金南伊(2020), 「입법과 창제의 시대, 문장의 책무와 한계 — 집현전 학사들이 官撰書에 부친 文字들을 중심으로 —」, 『震檀學報』 135, 震檀學會; 姜文植(2020), 「『治平要覽』 史論을 통해 본 집현전 관인의 정치관」, 『震檀學報』 135, 震檀學會; 宋芝媛(2020), 「『세종실록악보』 <붕래의>의 음악적 구현」, 『震檀學報』 135, 震檀學會; 劉宰賓(2020), 「열전(列傳)에서 교화서로: 『삼강행실도 — 열녀편』 판화의 고전 재해석」, 『震檀學報』 135, 震檀學會; 한영우(2021), 「세종과 집현전」, 『한국문화』 9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문식(2021), 「집현전(集賢殿)의 학풍과 학술 활동」, 『한국문화』 9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도희, 「세종의 악보 제작과 그 의미 — 기보를 통한 예악 보편주의의 실현과 조선 敎化의 규범화 —」, 『한국문화』 9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²⁾ 특히 1960년대 중반에 제출된 최승희의 논문은 “치폐시말(置廢始末)과 기능분석(機能分析)”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집현전의 설치 과정과 집현전의 직제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결과물이었다.³⁾ 이는 집현전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세종문화문고’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된 손보기의 『세종대왕과 집현전』은 이광린, 최승희, 이재철, 정두희 등의 기존 연구 성과를 망라한 것으로, 그 가운데는 집현전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⁴⁾ 이는 1980년대 초반에 집현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완료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세종대의 시대적 과제와 집현전 설치의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집현전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집

2) 李光麟(1954), 「世宗朝의 集賢殿」, 『崔鉉培 先生 還甲記念論文集』, 思想界社; 崔承熙(1966) 「集賢殿研究(上) — 置廢始末과 機能分析 —」, 『歷史學報』 32, 歷史學會; 崔承熙(1967), 「集賢殿研究(下) — 置廢始末과 機能分析 —」, 『歷史學報』 33, 歷史學會; 崔承熙(1973), 「朝鮮初期 言官에 관한 研究 — 集賢殿官의 言官化 —」, 『韓國史論』 1,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李載喆(1973), 「集賢殿의 機能에 대한 研究」, 『人文科學』 3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延世大學校 文科大學); 鄭杜熙(1980), 「集賢殿 學士 研究」, 『全北史學』 4, 全北大學校 史學會, 1980(鄭杜熙(1983),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의 제3장 「集賢殿學士의 社會의 背景과 政治의 成長」으로 수록); 韓亨周(1992), 「朝鮮 世宗代의 古制研究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36, 歷史學會; 俞英玉(1994), 「集賢殿의 運營과 思想的 傾向 — 性理學 理解를 中心으로 —」, 『釜山史學』 18, 釜山大學校 史學會; 姜文植(1998), 「集賢殿 출신 官人의 學問觀과 政治觀」, 『韓國史論』 39,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한중희(2007), 「朝鮮初期 集賢殿官研究」, 『朝鮮史研究』 16, 朝鮮史研究會; 손유경(2018), 「세종조 집현전 학사의 교유 양상 연구 —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을 중심으로 —」, 『漢文古典研究』 37, 한국한문고전학회 등등.

3) 崔承熙(1966); 崔承熙(1967) 참조.

4) 손보기(1984), 『세종대왕과 집현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전의 설치 목적이 ‘문풍(文風)의 진작’과 ‘인재의 육성’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세종대의 역사적 좌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선왕조의 개창 이후 유교·주자학을 국정교학(國定敎學)으로 표방하면서 통치체제로부터 일상생활의 습속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유교화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유교국가의 완성을 향한 도정(道程)이었다. 세종대는 당시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집권체제의 안정과 유교적 문물제도의 정비를 완수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함께 유교적 문물제도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필요했다. 집현전의 설치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집현전의 역사적 유래와 설치 과정 및 조직 구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서 그 대략적 내용이 밝혀졌지만 논지의 전개상 이를 요약·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 사료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집현전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직제를 비롯한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집현전관의 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규정, 그리고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각종 전적(典籍)을 수장(收藏)·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장서각(藏書閣)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집현전의 운영 체계를 집현전관의 학문적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과정과 인사 규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유력 가문의 자손으로서 문과 급제 성적이 우수한 인물이 집현전 관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집현전 관리들의 ‘장기근속’이 일반적이었으며, 승진과 전직은 ‘이차천전’(以次遷轉)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집현전 관리들

이 대부분 10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어떠한 학습 과정을 통해 어떤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였는지는 세세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자료를 모아서 조각을 맞추어 보면 학습 과정의 대략적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집현전의 설치와 조직 구성

2.1. 집현전의 역사적 유래

세종 11년(1429) 4월에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 등이 수문전(修文殿)과 보문각(寶文閣)의 제도로 복구하자는 상언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본조(本朝)에서 집현전(集賢殿)·수문전(修文殿)·보문각(寶文閣)을 설치하여 문신(文臣)을 대우하는 것은 곧 당·송의 관각(館閣) 제도입니다.⁵⁾

이는 집현전의 제도가 당·송 관각의 제도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당·송의 제도를 모방하여 여러 관전(館殿)을 설치한 것은 고려왕조였다. 고려왕조 제관전(諸館殿)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한국의 역사에서 집현전(集賢殿)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5) 『世宗實錄』卷44, 世宗 11년 4월 27일(壬寅), 12a (3책, p. 179 — 영인본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의 책수와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本朝置集賢殿·修文殿·寶文閣, 以待文臣, 卽唐·宋館閣之制也.”

〈표 1〉 고려왕조의 제관전학사(諸館殿學士)⁶⁾

	기관명의 변천		관원
	기원	연영전	
	文德殿	延英殿	大學士(從2품), 學士(正4품)
仁宗 14(1136)	修文殿	集賢殿	대학사·학사
忠烈 24(1298)	修文館 → 修文殿		
忠烈 29(1303)	右文館	進賢館	學士 → 司學(後並廢之)
忠烈 34(1308)	文翰署 → 右文館	文翰署 → 進賢館	右文館: 大提學(正2품)·提學(正3품)· 直提學(正4품) 進賢館: 大提學(從2품)·提學(正3품)· 直提學(正4품)
恭愍 5(1356)	修文殿	集賢殿	대학사·학사
恭愍 11(1362)	右文館	進賢館	대제학·제학·직제학
恭愍 18(1369)	修文殿	集賢殿	제학→학사
恭愍 21(1372)	右文館	進賢館	학사→제학

인종 때였다. 인종 16년(1138) 5월에 궁궐 안에 있는 전각과 궁문의 명칭을 고치고 왕이 직접 현판을 썼는데, 이때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바꾸었던 것이다.⁷⁾ 연영전은 고려 전기에 설치한 대표적 문헌(文翰) 기구 가운데 하나였다. 소속 관원은 문신 가운데서 재주와 학문이 뛰어난 자를 뽑아서 국왕의 시종(侍從)에 대비하게 했다고 한다.⁸⁾ 연영전을 계승한 집현전 역시 같은 성격의 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연영전이 집현전으로 명칭을 바꾼 그해 11월에 인종은 집현전에 행차하여

6) 『高麗史』 卷76, 志 30, 百官 1, 諸館殿學士, 29a-30a (中, p. 670 — 영인본 『高麗史』, 亞細亞文化社, 1983(再版)의 책수와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7) 『高麗史』 卷16, 世家 16, 仁宗 2, 16년 5월 庚戌條, 43b (上, p. 342). 『高麗史』 百官志에서는 연영전의 이름을 집현전으로 변경한 시점을 인종 14년(1136)이라고 하였다[『高麗史』 卷76, 志 30, 百官 1, 諸館殿學士, 29a-b (中, p. 670)].

8) 『高麗史』 卷76, 志 30, 百官 1, 諸館殿學士, 29a (中, p. 670). “諸館殿學士廢置沿革未詳, 率皆選文臣之有才學者, 入銜兼帶, 以備侍從.”

김부식(金富軾)에게 『주역』을(周易)강론하게 하고 여러 학사(學士)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⁹⁾ 이후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집현전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였고 조선 왕조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의 집현전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정종 원년(1399) 대사헌 조박(趙璞, 1356-1408)은 “집현전은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옛 제도를 회복하여 경적(經籍)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자고 건의했다. 당시 정종은 조박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준(趙浚)·권중화(權仲和)·조박·권근(權近)·이첨(李詹) 등을 제조관(提調官)을 삼고, 5품 이하의 문신을 교리(校理)에, 7품 이하의 문신을 설서(說書)·정자(正字)에 충당하여 집현전에 모이게 했다고 한다.¹⁰⁾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집현전의 구체적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정종 2년(1400)에 집현전은 보문각(寶文閣)으로 개칭되었다.¹¹⁾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태종 10년(1410)에 이르러 집현전을 열고 유사(儒士)를 선발하여 경사(經史)를 강론하게 하자는 사헌부의 상소가 있었지만¹²⁾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마침내 태종 17년(1417)에 사간원에서 ‘치도’(治道)에 관련한 몇 가지 항목을 건의했는데, 그 가운데 집현전의 활성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 핵심은 인재의 양성이었다. “인재는 국가의 기용(器用)이니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개진했던 것이다. 집현전의 설치는 인재를 선발해서 경사를 강독하고 글을 짓게[製述] 하여 문풍(文風)을 진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¹³⁾

9) 『高麗史』 卷16, 世家 16, 仁宗 2, 16년 11월 癸卯條, 45a (上, p. 343).

10) 『定宗實錄』 卷1, 定宗 원년 3월 13일(甲申), 7b-8a (1책, p. 146).

11) 『定宗實錄』 卷3, 定宗 2년 1월 10일(乙亥), 1b (1책, p. 161).

12) 『太宗實錄』 卷20, 太宗 10년 11월 21일(癸未), 28b-29a (1책, p. 570).

2.2. 세종대 집현전의 설치

세종대에 들어서도 문신들을 선발해서 문풍을 진작하자는 건의가 계속 이어졌다. 세종 원년(1419) 2월에 좌의정 박은(朴堧)은 문신을 선발하여 집현전에 모아서 문풍을 진작하자고 건의하였고 세종은 이를 가납(嘉納)하였다.¹⁴⁾ 그렇지만 박은의 건의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2월에 세종은 집현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사(儒士) 10여 인을 뽑아서 날마다 모여 강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¹⁵⁾ 이듬해(1420) 3월에 이조에서는 서운관(書雲觀)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아울러 사간원(司諫院), 종부시(宗簿寺), 예문관(藝文館), 승문원(承文院) 등의 정원을 줄여서 집현전에 녹관(祿官)을 두자고 건의하였다. 당시 이조에서는 서운관의 관원 10명, 사간원 1명, 종부시 1명, 예문관 1명, 승문원 1명, 전의감(典醫監) 2명 등 16명을 감원하자고 건의하였고, 사간원의 사간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조의 건의대로 감원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렇다면 이때 감원한 인원은 15명이다. 이는 집현전에

13) 『太宗實錄』卷33, 太宗 17년 1월 19일(丙午), 4a-b (2책, p. 144). “司諫院上治道數條, 一, 人材, 國家之器用, 不可以不預養也. 今所謂修文·集賢·寶文等閣, 徒有其名, 而無其實. 乞於國中, 創立集賢殿, 擇館閣提學中, 可主文者數員, 以爲提調, 命擇三品以下時散文臣年富資近者, 定其額數, 皆口傳從仕. 提調常會于此, 或講讀經史, 或命題製述, 以振文風.”

14) 『世宗實錄』卷3, 世宗 원년 2월 16일(辛卯), 14a (2책, p. 302).

15) 『世宗實錄』卷6, 世宗 원년 12월 12일(壬午), 13a (2책, p. 350). “上又曰, 曾有設集賢殿之議, 何不更啓. 其擇取儒士十餘人, 日會講論可也.”

16) 『世宗實錄』卷7, 世宗 2년 3월 13일(辛巳), 29b (2책, p. 375). “吏曹啓, 中朝欽天監各品員數只十一, 我朝書雲觀員數至二十七, 實爲冗濫. 請革掌漏四內二·視日四內二·司曆四內二·監候四內二·司辰四內二, 并革司諫院司諫一·宗簿寺尹一·藝文直館一·承文院僉知一·典醫檢藥四內二, 以置集賢殿祿官. 從之, 命司諫則勿革.”

녹관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그로부터 3일 후에 집현전의 정원을 정하고 관원을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⁷⁾

<표 2> 집현전의 직제: 세종 2년(1420) 3월 16일 제정

직책	품계	정원	관원	비고
영진사(領殿事)	정1품	2	박은(朴崐), 이원(李原)	겸관(兼官)
대제학(大提學)	정2품	2	유관(柳寬), 변계량(卞季良)	〃
제학(提學)	종2품	2	탁신(卓愼), 이수(李隨)	〃
부제학(副提學)	정3품	부제학 이하 낭청(郎廳) 10원		녹관(祿官) 경연관 겸임
직제학(直提學)	종3품		신장(申樞), 김자(金緒)	〃
직전(直殿)	정4품			〃
응교(應敎)	종4품		어변갑(魚變甲), 김상직(金尙直)	〃
교리(校理)	정5품		설순(契循), 유상지(尙尙智)	〃
부교리(副校理)	종5품			〃
수찬(修撰)	정6품		유효통(俞孝通), 안지(安止)	〃
부수찬(副修撰)	종6품			〃
박사(博士)	정7품		김돈(金墩), 최만리(崔萬理)	〃

17) 『世宗實錄』卷7, 世宗 2년 3월 16일(甲申), 30a (2책, p. 376). “新置集賢殿. 領殿事二正一品, 大提學二正二品, 提學二從二品, 以上兼官. 副提學正三品, 直提學從三品, 直殿正四品, 應敎從四品, 校理正五品, 副校理從五品, 修撰正六品, 副修撰從六品, 博士正七品, 著作正八品, 正字正九品, 以上祿官, 皆兼經筵官. 副提學以下郎廳置十員, 隨品差下, 以次選[選]轉, 各品不過二員, 五六品兼副檢討. 又於經筵, 加設司經, 七品以下兼之. 各品皆序本品班頭, 副提學班在司諫之上. 又朴崐·李原領殿事, 柳寬·卞季良爲大提學, 卓愼·李隨提學, 申樞[樞]·金緒直提學, 魚變甲·金尙直應敎, 契循·尙尙智校理, 俞孝通·安止修撰, 金墩·崔萬理博士. 初因前朝之制, 修文殿·集賢殿·寶文閣, 大提學·提學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直殿·直閣以三四品爲之, 然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官而已. 至是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擇文臣有才行年少者充之, 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

직책	품계	정원	관원	비고
저작(著作)	정8품			〃
정자(正字)	정9품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집현전 인사의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전사(領殿事) 2명, 대제학 2명, 제학 2명은 겸관(兼官)으로 한다.
- 부제학 이하 정자까지는 모두 녹관으로 하며, 경연관(經筵官)을 겸직한다.
- 부제학 이하의 낭청은 10명을 둔다. 품계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고, 차례대로 천전(遷轉)하게 하되[以次遷轉], 각각의 품계에 2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 5, 6품<의 품계를 가진 집현전 관원>은 부검토(副檢討)를 겸직한다.
- 경연(經筵)에 사경(司經)을 더 설치하여[加設] 7품 이하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다.¹⁸⁾
- 각 품<의 집현전 관원>은 모두 해당 품계[本品]의 반두(班頭: 首班)에 위치한다.
- 제부학(提副學: 副提學의 誤記 — 인용자 주)의 품반(品班: 해당 품階의 차례)은 사간(司諫)의 위에 있다.

이때에 이르러 이전까지 유명무실했던 수문전과 보문각 등을 모두 혁파하고 집현전만 남겨서, 궁중에 관사를 설치하고 문신 가운데 재행(才行)이 있고 연소한 자를 선택하여 경사를 강론하는 것을 오로지 일

18) 태조 원년 7월 28일에 제정된 문무백관의 관제에 따르면 경연관에는 領事 1, 知事 2(正2品), 同知事 2(從2品), 參贊官 5(正3品), 講讀官 4(從3品), 檢討官 2(正4品), 副檢討官(正5品), 書吏(七品) 등이 있었으며, 부검토(관)의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 2년(1420) 3월의 조치는 경연관으로 하여금 副檢討를 겸하게 하고, 司經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설치함으로써 경연 제도를 보강하려는 조치였다.

삼게 하여 고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정한 원칙 가운데 몇 가지가 주목된다. 먼저 집현전에 녹관을 설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모두 경연관으로 겸직하게 한 것은 경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부제학 이하 낭청 10명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신장 이하 최만리까지 10명의 낭청을 처음으로 임명하였다. 집현전 관원을 각 품계의 반두(班頭)로 삼은 것도 눈에 띈다.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직제를 새롭게 정하여 집현전의 면모를 일신한 이튿날에 세종은 적당한 양을 헤아려 노비들을 집현전에 소속시키도록 명하였다.¹⁹⁾ 4월에는 집현전에 서리(書吏) 10명을 두도록 조치하였는데, 경연 서리의 예에 따라 실차(實差)와 예차(預差)를 각각 5명씩 두고 7품이 되면 거관(去官)하게 하였다.²⁰⁾ 집현전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의 충원이었다. 세종 4년(1422) 10월에는 집현전에 5명의 관원을 더 두도록 하였다.²¹⁾ 부제학 이하 낭청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 것이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세종 11년(1429) 4월에는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 등이 상언하여 세종 2년에 혁파한 바 있는 수문전과 보문각을 회복해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건의를 올렸다. 당시의 건의 내용을 통해 집현전의 구성과 변천 과정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인지 등은 먼저 당송(唐宋)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하나는 관각(館閣)의 직책이 천하의 영재(英才)를 대우하는 터전이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제고(知制誥)에는 내제(內制)와 외제(外制)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인지 등은 조선왕조에서 집현전·수문전·보문각을 설치하여 문신을 대우한 것은 곧 당송의 관

19) 『世宗實錄』 卷7, 世宗 2년 3월 17일(乙酉), 30b (2책, p. 376).

20) 『世宗實錄』 卷8, 世宗 2년 4월 12일(庚戌), 4a (2책, p. 379).

21) 『世宗實錄』 卷18, 世宗 4년 10월 28일(壬子), 10a (2책, p. 509).

각 제도이고, 승문원(承文院)과 사간원(司諫院)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게 하고, 외지제교(外知製敎)는 10명으로 정하여 다른 관원들로 하여금 이를 겸직하게 한 것은 송조(宋朝)의 내제(內制)·외제(外制)의 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날’[曩時] 관각의 인선을 썩 잘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각의 직책이 중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세’에 대신의 건의에 따라 집현전 정원 15인만 존속하여 외지제교를 겸하게 하여 그 임무를 전담하게 하여 성공하기를 권장하고, 그 나머지 수문전과 보문각은 모두 혁파해 버렸다는 것이었다. 정인지 등은 일단 이와 같은 조정의 조치가 인재를 육성하고 그 성취를 기대하는 방법으로서 훌륭하다고 평가하였다.²²⁾

이상과 같은 정인지 등의 언급이 실제 상황과 꼭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문전·보문각을 혁파하고 집현전만 존치한 것은 세종 2년(1420) 3월의 일이었고, 그 정원을 5명 더 증원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세종 4년(1422) 10월이었다. 정인지 등은 집현전관 15명으로 하여금 외지제교를 겸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리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인 세종 12년(1430) 5월이었다. 당시 집현전에서는 이른바 「문신권학조건」(文臣勸學條件)을 보고하였는데, 그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22) 『世宗實錄』卷44, 世宗 11년 4월 27일(壬寅), 12a-b (3책, p. 179). “集賢殿副提學鄭麟趾等上言, 臣等竊稽唐·宋之制, 館閣之職, 所以待天下英才之地也, 知制誥, 則有內制外制之別焉. 本朝置集賢殿·修文殿·寶文閣, 以待文臣, 卽唐·宋館閣之制也. 承政院·司諫院, 皆帶知製敎, 而外知製敎, 則定爲十員, 以他官帶之, 卽宋朝內制外制之法也. 但以曩時館閣除拜, 不出於妙選, 而文臣鮮有不帶者焉. 於是館閣之職, 爲不重矣. 是以近歲大臣建白, 止存集賢殿定員爲十五, 而仍帶外知製敎, 俾專其任, 而責其成功, 其餘修文殿·寶文閣, 悉皆革除, 育材期待之方, 可謂美矣.”

문신으로서 3품 이하에서 9품까지의 문신 가운데 대간(臺諫)을 제외하고 문예(文藝)가 있는 수십 인을 골라서 품계에 따라 집현전 <관>을 겸직하게 하여, 무릇 사대표전(事大表箋)과 본국의 문서를 지제교(知製敎)의 예에 의해 제술(製述)하게 하고, 집현전 녹관은 사간원(司諫院) 내제(內製)의 예에 의하여 반드시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집현전의> 겸관 10인은 외제(外製)를 겸임하게 하여……²³⁾

세종은 이와 같은 집현전의 보고를 이조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집현전 녹관은 사간원 내제의 예에 의거하여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외제 10인은 예전대로 선택하여 그 직함을 겸임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²⁴⁾

어쨌든 세종 11년에 정인지 등이 수문전과 보문각의 회복을 요청했던 것은 조정의 신료들[搢紳] 가운데 문학적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관각의 직함을 겸하게 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문풍을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수문전과 보문각을 회복하여 적정한 정원을 정하고 대소 문신 가운데 문예(文藝)와 행의(行義)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직함을 겸하게 하고, 외지제교는 이와 같은 관각의 신하들 가운데서 엄선하여 겸하게 하고, 집현전관은 내제(內制)의 예에 의거하여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관각의 제도는 한 시대의 중선(重選: 중요한 人選)으로 여겨질 것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도 넓혀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²⁵⁾

23) 『世宗實錄』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a-b (3책, p. 239). “集賢殿將文臣勸學條件以啓, 文臣三品以下至九品, 除臺諫, 擇有文藝數十人, 隨品兼集賢殿, 凡事大表箋及本國文書, 依知製敎例製述, 集賢殿祿官, 依司諫院內製例, 必帶知製敎, 兼官十人則帶外製…….”

24) 『世宗實錄』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b (3책, p. 239). “命下吏曹. 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吏曹判書權軫·參判鄭欽之等以爲, 集賢殿祿官, 依司諫院內製例, 帶知製敎, 外製十人, 仍舊選擇帶銜.”

25) 『世宗實錄』卷44, 世宗 11년 4월 27일(壬寅), 12b (3책, p. 179). “然臣等竊念才難

세종 12년(1430) 10월에 세종은 그간에 구제(舊制)를 변경한 것에 대해 회고한 바 있다. 당시 세종은 구제를 고치는 것은 비록 옳지 않다고 하지만 역대로 계세(繼世)의 군주는 그 시의를 참작하여 도태하거나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곽존중(郭存中)이 용관(冗官)을 태거(汰去)하여 감축한 녹봉이 3천여 석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자신이 가설한 것은 오직 집현전과 종학(宗學)뿐이라고 하였다.²⁶⁾ 이는 쓸데없는 관직을 없애는 와중에도 집현전의 정원을 늘렸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집현전의 녹관은 세종 2년(1420) 3월 10명으로 출발하여, 세종 4년(1422) 10월에 5명을 증원하였고, 세종 8년(1426) 무렵 1명을 더 증원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 17년(1435)에 『통감훈의』(通鑑訓義: 資治通鑑訓義)의 편찬을 위해 6명을 증원하여 총 22명이 되었고, 세종 17년 7월에는 서연녹관(書筵祿官) 10명을 혁파하고 집현전에 합하여 32명이 되었다. 이후 32명은 너무 많아 쓸데없는 인원이 있으니 12명을 혁파하자는 집현전의 건의에 따라 세종 18년(1436) 윤6월에 20명으로 줄었다. 이후 집현전 녹관의 정원은 20명으로 고정되었다.²⁷⁾

之嘆，自古爲然。至於文藝，雖云儒者之末技，亦莫非得於精神之運・心術之動者也，類非額人指期，而有可以成效者也。今縉紳之間，文學之臣，不爲不多，而館閣之銜，皆不得帶，非惟育材之不廣也，抑亦非所以砥礪士心，振起文風之術也。臣等以爲宜復修文殿・寶文閣，量宜定數，大小文臣之文藝行義，爲人所推服者，皆帶其銜，而外知製教，則館閣之中，尤加妙選以兼之，集賢殿則宜如內制而皆兼之。如此則館閣，必爲一時之重選，而育材期待之方，亦不爲不廣矣。”

26) 『世宗實錄』卷50, 世宗 12년 10월 19일(丙戌), 8b-9a (3책, pp. 266-267). “又謂金宗瑞曰，更改舊制，雖曰不可，然歷代繼世之君，因其時宜，或汰或設。曩者郭存中掌汰冗官，所減之錄，至三千餘石，厥後惟加設集賢殿・宗學兩官耳。”

27) 崔承熙(1966), pp. 15-18.

〈표 3〉 집현전 녹관(祿官)의 정원 변동

왕력	서기	정원	변경 사유	『세종실록』의 전거
세종 2년 3월	1420	10		02-03-16(甲申)
세종 4년 10월	1422	15		04-10-28(壬子)
세종 8년	1426	16	丙午년에 6인 增置	18-윤6-11(乙亥)
세종 17년	1435	22	乙卯년에 『자치통감훈의』의 편찬으로 인해 6인 增	18-윤6-11(乙亥)
세종 17년 7월	1435	32	서연관 10인을 혁파하여 집현전에 합속	17-07-11(庚辰)
세종 18년 윤6월	1436	20	집현전의 건의	18-06-02(丁酉) 18-윤6-11(乙亥)

2.3. 장서각(藏書閣)의 건립과 도서 관리

학술 연구 기관으로서의 집현전의 기능과 관련해서 집현전이 궁중의 서적을 관리하는 궁중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⁸⁾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정종 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종 원년(1399)에 조박(趙璞)이 상언을 통해 집현전에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多置書籍] 예문교서(藝文校書: 藝文館과 校書監)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게 하자고 건의한 바 있었다.²⁹⁾

세종 10년(1428) 8월에 세종은 집현전 장서각(藏書閣)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³⁰⁾ 이는 궁중 도서관으로서 많은 서적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계전(李季甸)은 「집현전장서각송병서(集賢殿藏書閣頌并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8) 李載喆(1973), pp. 132-140.

29) 『定宗實錄』 卷1, 定宗 원년 3월 13일(甲申), 7b-8a (1책, p. 146). “大司憲趙璞上言, 集賢殿, 徒有其名, 而無其實. 請復舊制, 多置書籍, 令藝文校書主之…….”

30) 『世宗實錄』 卷41, 世宗 10년 8월 7일(丙戌), 8a (3책, p. 140). “上又曰, 營繕雖多, 停之者亦多. 今集賢殿藏書閣, 不可不構, 卿等思之.”

즉위하신 처음에 집현전을 설치하시고 문신을 정선(精選)하여 그 관직에 충당하고, 경사(經史)를 많이 수장하여 강론에 대비하였고, 날마다 경연(經筵)을 열어 고금(古今)을 상고하고, 육경(六經)의 글을 연구하고 백대(百代)의 사적을 두루 관찰하셨다.³¹⁾

여기에서 이계전은 집현전에 많은 경전과 사서가 수장(收藏)되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집현전 장서각은 세종이 그 건립 문제를 발의한 지 1년 만인 세종 11년(1429)에 건설이 완료된 것 같다.³²⁾ 그렇다면 당시 서적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을까? 세종 17년(1435) 6월에 『통감훈의』(通鑑訓義)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였다. 세종은 응제시(應製詩)를 편찬하여 축으로 만들고 권채(權採)에게 서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동방(東方)에 서적이 적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없음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신충(宸衷)에서 우리나라와 유사(有司)에 명하여 주자(鑄字)의 규모를 새롭게 하여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또 유문(遺文)과 신집(新集)을 다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어, 사신(使臣)이 파견될 때 중국에서 널리 구하게 하고, 문신(文臣)을 파견하여 나라 안에서 널리 구입하니, 이에 서적[書典]이 날마다 많아지고 달마다 불어났다. 장서궐(藏書闕: 藏書閣의 오기 — 인용자 주)을 세우고 목록을 적어서 간직하니, 동우(棟宇)에 차고 넘쳐서 동국(東國)이 있는 이래로 문적(文籍)이 많기가 오늘날처럼 성한 때가 없었다.³³⁾

31) 『東文選』卷50, 頌, 「集賢殿藏書閣頌并序(李季甸)」, 27a-b (2책, p. 197 — 影印標點 『東文選』, 民族文化推進會, 1999의 책수와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即位之初, 爰置集賢殿, 精選文臣, 以充其官, 多收經史, 以備講論, 日開經筵, 商確古今, 研窮六經之文, 備觀百代之跡.”

32) 『東文選』卷50, 頌, 「集賢殿藏書閣頌并序(李季甸)」, 27b (2책, p. 197). “歲在己酉, 命新建集賢殿于宮城西門之內. 又營藏書閣五楹於其北, 增崇其基, 崢嶸壯麗, 如跂斯翼, 隨壁作架, 挿以諸書, 分門類聚, 表以牙籤, 披閱之便, 易於反掌.”

세종은 부족한 서적을 보충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하나는 해외의 서적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서적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중국과의 사신 왕래를 통해 서적을 유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공무역을 통해 서적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사신 왕래를 통한 서적의 유통은 명의 사신들이 서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와 조선의 사신들이 조공(朝貢)에 대한 회사(回謝)의 형식으로, 또는 황제의 하사품으로 서적을 받아오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 산재한 서적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행정 기구를 통해 민간의 서적을 구입하는 방법과 민간의 자발적 기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포상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³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되거나 수집된 도서는 집현전의 장서각에 수장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집현전이 폐지된 이후 홍문관으로 이전되었다. 연산군 6년(1500) 9월에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등이 「홍문관원권장절목」(弘文館員勸獎節目)을 보고했는데, 그 가운데 전적(典籍)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종께서는 서적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어 혹은 구입하기도 하고, 혹은 인쇄하기도 하여 집현전에 수장하였는데, 동방의 서적이 이때보다도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적이 홍문관에 있습니다.³⁵⁾

33) 『世宗實錄』卷68, 世宗 17년 6월 8일(戊申), 25a (3책, p. 633). “深慮東方書籍鮮少, 人不能學, 乃出自宸衷, 命有司新鑄字之規, 無書不印, 無人不學. 又慮遺文新集之未盡得也, 因使介旁求於上國, 遣文臣廣購於國中, 於是書典之至, 日益月增, 建藏書闕[閣], 籍而藏之, 充溢棟宇. 自東國以來, 文籍之多, 未有如今日之盛也.”

34) 구만옥(2016),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들녘의 제5장 1절과 2절을 참조.

35) 『燕山君日記』卷39, 燕山君 6년 9월 26일(丁丑), 5a (13책, p. 428). “世宗尤重書籍, 或購或印, 藏于集賢殿, 東方書籍, 未有盛於此時. 今則書在弘文館…….”

집현전의 도서 관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아마도 집현전 장서각이 건설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 11년(1429) 3월에 집현전에서는 도서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의를 올렸다. 그것은 도서인을 만들어 소장 서책에 날인하는 문제였다. 집현전에서는 ‘경연’(經筵)과 ‘반사’(頒賜)라는 두 종류의 도서(圖書: 印章)를 건의해서 윤허를 받았다. 전자는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책에 표기하기 위한 도서인(圖書印)이었고, 후자는 향후에 국왕이 집현전에 반사하는 도서에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⁶⁾

세종 25년(1443) 7월에는 집현전에서 서책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였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이었다.³⁷⁾ 첫째, 동궁(東宮)에 서책을 들여갈 때는 황양목(黃楊木)으로 부신(符信)을 만들어 대내(大內)의 예에 따라 사용하게 하자고 하였다. 당시 경연에 필요한 책을 대내에 들일 때는 중관(中官)이 오매부(烏梅符)를 보여준 다음 가져갔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궁에 들어가는 서책도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3년에 한 차례씩 서책을 마감(磨勘)하자고 하였다. 여기서 ‘마감’이란 ‘조사·확인’을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도서 목록에 의거해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책의 수량을 대조·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당시 집현전에서는 이와 같은 마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서책을 유실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건의를 했던 것이다. 아울러 서책 관리를 담당할 관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수량에 의거하여 마감을 하고,

36) 『世宗實錄』卷43, 世宗 11년 3월 26일(壬申), 28a (3책, p. 172). “集賢殿啓, 經筵所藏書冊, 不可無標記. 請以經筵二字作圖書, 每卷着標, 又以內賜二字作圖書, 如有賜者, 着標以賜. 從之.”

37) 『世宗實錄』卷101, 世宗 25년 7월 17일(庚午), 13a (4책, p. 494). “集賢殿啓, 經筵書冊入內時, 中官齋烏梅符, 宣傳後乃入. 東宮書冊入內, 請以黃楊爲符, 一依大內例用之. 且書冊累年不得磨勘, 或致遺失, 自今每三年一次磨勘. 若所掌官員遞代, 則依數磨勘, 置簿交割. 各司若有參考事, 則必令官吏進本殿考之, 不得已有齋去冊, 則辭緣啓達, 稱臣著名而去, 事畢後隨即親齋還納. 從之.”

이를 문서에 기록하여 교환하도록 하였다[置簿交割]. 서책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서책 열람과 대출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자고 하였다. 각 관청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책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로 하여금 집현전에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책을 대출해 가야 한다면 그 사연을 보고하고 ‘신(臣) 아무개’라고 서명을 한 다음 빌려 가게 했으며, 관련 업무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반납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당시 집현전의 서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3. 집현전의 운영 체계

3.1. 집현전관의 교육

설립 초기부터 집현전관에게는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문장을 저술하는 학문 활동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집현전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미 학문적 능력을 구비한 인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초기에 유교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국왕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예악문물’(禮樂文物)의 정비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종 2년(1420) 5월에 당시 집현전 대제학인 유관(柳寬)과 변계량(卞季良)이 집현전에서 관원들에게 시(詩)를 시험하였다고 한다.³⁸⁾ 이는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매우 짧은 기사이지만 집현전 관원들

38) 『世宗實錄』卷8, 世宗 2년 5월 25일(壬辰), 13b (2책, p. 384). “柳觀·卞季良會集賢殿, 試殿官等詩.”

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세종이 집현전 교리인 유상지(兪尙智) 등을 조용(趙庸)에게 보내 배우도록 한 적도 있다. 『율려신서』(律呂新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조용을 추천했기 때문이었다.³⁹⁾ 조선왕조에 들어서 『율려신서』가 수록되어 있는 『성리대전』이 수입된 첫 번째 사례는 세종 원년(1419) 12월에 경녕군(敬寧君) 이비(李比[示+非])가 황제가 하사한 어제 서문이 붙어 있는 ‘신수(新修) 『성리대전』을 받아온 것이고,⁴⁰⁾ 유상지가 집현전 교리에 임명된 것은 세종 2년(1420) 3월 16일이니, 세종이 유상지를 조용에게 보내 『율려신서』를 익히게 한 것은 세종 2년 3월 16일에서 이듬해 8월 18일 이전의 어느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은 재위 7년(1425) 11월에 대제학 변계량에게 명해 사학(史學)을 읽을 만한 자를 뽑아서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변계량은 집현전 직전 정인지와 응교 설순(僊循), 그리고 인동현감(仁同縣監)인 김빈(金鑓)을 천거하였다. 세종은 김빈을 집현전 수찬에 제수하는 한편, 이들 세 사람에게 여러 역사서를 나누어 읽게 하여 고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⁴¹⁾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세종이 경연에서 『좌전』(左傳), 『사기』(史記), 『한서』(漢書), 『강목』(綱目), 『송감』(宋鑑) 등에 수록된 옛 일[古事]을 물어보았더니 다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종은 윤희(尹淮)에게 집현전 유사(儒士)들에게 여러 역사책을 나누어 주어 읽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다. 윤희는 이와 같은 세종의 의견에 반대했다. 경학(經學)이 우선이고 사학은 그 다음이며, 사학만을

39) 『世宗實錄』卷13, 世宗 3년 8월 18일(戊申), 4b (2책, p. 446). “上嘗以律呂新書顧問, 無有知者, 左右以庸對, 乃命集賢殿校理兪尙智等就學之.”

40) 『世宗實錄』卷6, 世宗 원년 12월 7일(丁丑), 10a-b (2책, p. 348).

41) 『世宗實錄』卷30, 世宗 7년 11월 29일(甲子), 18b-19a (2책, p. 703). “命大提學卞季良, 擇可讀史學者以聞, 季良以直集賢殿鄭麟趾·集賢殿應教僊循·仁同縣監金鑓薦, 上卽除鑓爲集賢殿修撰, 令三人分讀諸史, 以備顧問.”

오로지 닦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세종은 당시의 유자(儒者)들이 경학을 닦는다고 말하지만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窮理正心之士]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⁴²⁾ 이를 통해 세종이 어떤 방향의 학문 탐구를 추구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이른바 ‘장구(章句)나 일삼는 선비’[章句之士]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전고(典故)에 해박한 학자를 원했으며, 그를 위해서는 궁리의 일환으로 사학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집현전관의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제도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이다. 이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하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집현전 관원들에게 부여했던 특혜 가운데 하나였다. 세종 8년(1426) 12월에 세종은 집현전 부교리 권채(權綵 = 權採), 저작랑(著作郎) 신석견(辛石堅), 정자(正字) 남수문(南秀文) 등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내가 너희들을 집현관(集賢官)으로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어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서에 전심(專心)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본전(本殿: 집현전)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독서에 전심하여 공효(功效)를 나타내어 나의 뜻에 부합하게 하고, 독서의 규범(規範)은 마땅히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⁴³⁾

42) 『世宗實錄』卷30, 世宗 7년 11월 29일(甲子), 19a (2책, p. 703). “前此, 上問於尹淮日, 吾欲使集賢殿儒士, 分授諸史而讀之. 淮對曰, 不可. 大抵經學爲先, 史學次之, 不可專治史學也. 上曰, 吾於經筵, 問以左傳·史記·漢書·綱目·宋鑑所記古事, 皆曰, 不知. 若令一人讀之, 其不得遍覽必矣. 今之儒者, 名爲治經學, 而窮理正心之士, 未之聞也.”

43) 『世宗實錄』卷34, 世宗 8년 12월 11일(庚午), 16b (3책, p. 52). “召集賢殿副校理權綵·著作郎辛石堅·正字南秀文等, 命曰, 予以爾等除集賢官者, 以其年少有

이는 이른바 ‘사가독서’의 시초로 주목되는 기사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은 집현전 관리들의 학습이 변계량의 지도하에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세종의 지시는 변계량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변계량은 일찍이 태종에게 연소한 유생 한두 명을 선택해서 사관(仕官)을 면제해 주고 고요한 곳에서 독서를 하게 하여, 그들이 정통(精通)하게 된 이후에 크게 쓰자고 요청한 바 있었다. 태종은 이와 같은 변계량의 요청이 옳다고 여겼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세종대에 이르러 변계량이 다시 이와 같은 요청을 하자 세종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당시에 권채·신석견·남수문 등이 읽은 책은 『중용』과 『대학』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세종 10년(1428) 3월에 세종은 권채에게 고요한 곳에서 독서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었는데, 권채는 다른 효과는 없고 다만 마음이 산란하지 않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자(金縉) 역시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에 응대하고 손님을 접대해야[應事接賓] 하므로 산사(山寺)의 고요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세종은 산사에서 독서하도록 사가독서의 방식을 변경하였다.⁴⁴⁾

세종 12년(1430) 5월 18일의 경연에서 세종은 검토관(檢討官)으로 참여한 권채에게 그간 학문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가독서의 연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일찍이 변계량은 태종에게 집현전 관원 가운데 총민(聰敏)한 한두 사람을

將來，祇欲其讀書有實效也。然各緣職事，早暮未暇專心讀書。自今勿仕本殿，在家專心讀書，以著成效，以副予意，其讀書規範，當受卞季良指畫。”

- 44) 『世宗實錄』卷39, 世宗 10년 3월 28일(庚戌), 32b-33a (3책, p. 122). “上曰, 卞季良嘗白太宗, 請擇年少可學一二儒, 除仕官就靜處讀書, 可能精通而大用, 太宗然之而未果, 又請於予, 予許之. 讀書者爲誰. 左代言金縉曰, 辛石堅·南秀文也. 上謂權採曰, 爾亦曾詣讀書之列, 所讀何書. 採曰, 讀中庸·大學. 上曰, 讀於靜處, 有何殊効. 採曰, 更無他効, 但心不亂耳. 縉亦曰, 在家則不得不應事接賓, 莫如山寺之閑寂. 上從之.”

뽑아서 ‘중용집석혹문’(中庸輯釋或問)과 ‘대학집석혹문’(大學輯釋或問)을 연구하게 하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권채가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태종은 두 책을 너무 오래 독서하게 되면 다른 책을 공부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이 즉위한 이후 변계량은 다시 권채 등으로 하여금 독서하게 하자라는 건의를 올렸다. 세종 역시 태종과 같은 염려를 했지만 변계량이 학문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소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윤허하였다. 세종의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는 권채 등이 독서를 한 지 오래되었으니 『중용』과 『대학』에 익숙해졌는지 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변계량이 말하기를 권채 등이 사가독서를 한 이후에 그 답론을 들어보니 지난날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권채는 변계량의 지시에 따라 『중용』과 『대학』을 3년 동안 읽었으며, 작년 봄부터는 『논어』, 『맹자』와 오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민첩하지 못해 아직까지 정숙(精熟)하지 못하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세종은 두시(杜詩)와 한류문(韓柳文) 같은 글도 열심히 깊이 있게 읽어보라고 지시하였다.⁴⁵⁾

이처럼 권채 등은 세종 8년(1426) 12월 이후 약 3년 동안 『중용』과 『대학』을 독파하였고, 세종 11년(1429) 봄부터는 『논어』, 『맹자』와 오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가독서 기간을 통해 학문적 숙성 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일정한 교과 과정을 통해 경전에 대한 공부와 문장 학습을 이어갔던 것이다.

이처럼 세종은 집현전 관원 가운데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으며, 몸가짐이 단정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긴 휴가를 주고 산에 들어가서 글을 읽게 하고 그 비용을 관에서 지급하였다.⁴⁶⁾ 때문에 당시 집현

45) 『世宗實錄』 卷48, 世宗 12년 5월 18일(丁巳), 21a-b (3책, p. 237).

46) 『大東野乘』 卷3, 筆苑雜記 卷1(III, p. 672 — 국역본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전에 선발되는 것을 영주(瀛州)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고 한다.⁴⁷⁾ 영주란 신선이 산다는 전설상의 산이다. 영주에 오른다는 것은 선비가仙境(仙境)에 들어간 것처럼 특별한 영예를 얻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당 태종이 천하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문학관(文學館)을 설치하고 18인의 문신을 학사(學士)로 임명하자 당시 사람들이 이를 영주에 올랐다고 일컬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집현전 관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대 재가독서(在家讀書)를 거쳐 상사독서(上寺讀書)로 변화하였던 사가독서 제도는 이후 독서당(讀書堂)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가독서의 연장선에서 집현전에서는 「문신권학조건」(文臣勸學條件)을 마련하게 되었다.⁴⁸⁾ 그 전반부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 후반부에는 권학(勸學)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겸관(兼官) 10인은 외제(外製)를 겸임하게 하여, 본사(本司)에 일이 없는 날에는 본전(本殿 = 集賢殿)에 나아가서 강학(講學)하고, 또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諸史], 한류문(韓柳文: 韓愈와 柳宗元의

1985(중판)의 책수와 原文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世宗設集賢殿, 聚文學之士, 培養數十年, 人材輩出, 尙慮朝衙夕直, 不專意講讀, 選年少有才行者數人, 許暇遊山讀書, 官給供具, 肆意於經史百子天文地理醫藥卜筮, 淹貫該博, 無所不通, 將爲大用之地.”; 『大東野乘』卷1, 慵齋叢話 卷4(I, p. 595). “世宗始設集賢殿, 招聚文學之士, 朝夕延訪, 猶慮文學未振, 更選其中年少聰敏者, 上寺讀書, 供饋甚豐.”

47) 『四佳集』文集, 補遺 1, 「輸忠勁節佐翼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蓬原府院君兼領經筵事·贈諡忠貞鄭公神道碑銘并序」, 24a (11책, p. 294 —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의 책수와 페이지 번호. 이하 문집의 경우도 같음). “世宗設集賢殿, 置員二十人, 妙選一時文學之士充之, 備顧問, 演綸綍, 高步花磚, 昵承睿眷, 時人擬之登瀛洲.”; 『大東野乘』卷13, 龍泉談寂記(III, p. 114) “英廟篤意文治, 育材作人之美, 高邁前昔. 置集賢殿, 盛萃儒士, 更日直宿, 以備討論, 寵接之隆, 世比登瀛洲焉.”

48) 『世宗實錄』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a-b (3책, p. 239).

문장) 등의 글을 적당한 대로 스스로 맡아서 읽게 한다. 매 사중월(四仲月)에 표(表)·전(箋)·시(詩)·문(文) 하나를 출제하여, 녹관과 검관으로 하여금 일시(日時)를 한정하지 말고 제술하게 하고, 당상관이 본전에 모여서 그 <등급의> 고하(高下)는 매기지 말고 다만 평점(評點)만을 더하게 한다. 2품 이상의 문신은 집현전 당상에 적당하게 더 임명하여 그 직함을 갖게 하고, 그 녹관과 검관은 경연을 번갈아 맡게 하여 우대하고 장려하는 것을 보인다.⁴⁹⁾

이와 같은 건의 사항이 모두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당시 집현전에서 문신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학문을 권장하고자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은 집현전관에게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탐구를 명하기도 했다. 예악문물의 정비 과정에서 천문역산학이나 중국어와 같은 특정 분야의 교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종 13년(1431) 3월에 집현전 교리인 김빈과 한성부 참군인 우효강에게 산법을 익히도록 명한 것은⁵⁰⁾ 당시 추진하고 있던 천문역산학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16년(1434) 1월에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은 상서를 올렸다. 그 내용은 세종의 명에 따라 사역원에서 중국어[華語]를 학습하고 있는 수찬 신석전, 부수찬 남수문, 저작랑 김예몽(金禮蒙) 등을 다시 집현전에 돌아오게 해서 문학에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세종은 중국어를 겸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문에 손해될 것이 없으며, 오경과 사서를 중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되면 국가에 보탬이 되는 바가 많을 것이라는 취지로 영의정 황희(黃喜)와 좌의정 맹사성(孟思誠)에게 문의하

49) 『世宗實錄』卷48, 世宗 12년 5월 27일(丙寅), 24b (3책, 239쪽). “兼官十人則帶外製, 本司無事日, 就本殿講學, 又於四書·五經·諸史·韓柳文等書, 隨宜自占看讀. 每四仲月, 出表·箋·詩·文一題, 令祿官及兼官, 不限日時製述, 堂上官會本殿, 勿第其高下, 但加評點. 二品以上文臣, 於集賢殿堂上, 量宜加差帶銜, 其祿官兼官, 遞帶經筵, 以視優獎.”

50) 『世宗實錄』卷51, 世宗 13년 3월 12일(丙子), 28b (3책, p. 300).

였다. 이에 황희 등은 중국어를 온전히 학습하게 하여 사대(事大)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⁵¹⁾

세종 16년(1434) 3월에 세종은 예조에 전지(傳旨)하여 집현전 관원의 교육 방안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르면 집현전 관원들에게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통해 그 재주를 연마하도록 이미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집현전 관원들이 오랫동안 직사(職事)를 폐지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 관원들에게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서적을 낭청(郎廳)들의 재질(材質)에 따라 나누어서 강독하도록 하고, 매일 어떤 관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독했는지 명백하게 장부에 기록해 두고, 월말이 되면 등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매월 열흘에 한 차례씩 당상관이 시문제(詩文題)를 출제하여 여러 관원들로 하여금 제술하게 하여 1등을 간택하고, 입격한 시문도 또한 월말에 등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같은 규정을 항식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였다.⁵²⁾

그로부터 며칠 후에 세종은 경연에 참석한 집현전관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문翰(文翰)을 일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미년(1427, 세종 9)의 친시(親試)에서 집현전 <관원> 많이 합격하여 내 은근히 기뻐하였고,⁵³⁾ 이는 필시 항상 문翰을 일삼았기

51) 『世宗實錄』 卷63, 世宗 16년 1월 10일(戊子), 3b-4a (3책, p. 536).

52) 『世宗實錄』 卷63, 世宗 16년 3월 17일(甲午), 30b-31a (3책, pp. 549-550). “傳旨禮曹, 集賢殿官員, 專爲講經製述, 以鍊其才, 曾有著令, 近來久廢職事, 誠爲不可. …… 自今集賢殿官員, 經史子集, 隨其郎廳材質, 分授講讀, 每日某官, 自某處·至某處講讀, 明白置簿, 至月季開寫以聞. 每月十日一次, 堂上出詩文題, 令諸官製述, 揀擇一等, 入格詩文, 亦於月季開寫以聞. 書筵官員賓客分經, 使之講讀, 依集賢殿官員例施行, 永爲恆式.”

53) 이는 세종 9년의 重試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험에서 乙科 1等 3인에 鄭麟趾와 俞孝通이, 을과 2등 9인에 崔萬理, 僕循, 韓處寧, 權採, 金孝貞 등이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근자에 들으니 집현전 관원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고, 대간(臺諫)과 정조(政曹)<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한다. 나는 집현전을 중선(重選)으로 여겨 예(禮)로써 대우하기를 특별히 하여 대간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일을 싫어하고 옳기기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다면, 하물며 서관(庶官)들은 어떠하겠는가. 인신(人臣)으로서 봉직하는 뜻이 과연 이와 같은 것인가. 그대들은 태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학술(學術)을 전업(專業: 학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여 종신토록 하기를 기약하라.⁵⁴⁾

이를 통해 집현전 운영에 대한 세종의 생각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집현전은 ‘문헌에 종사하는’ 기관이었고, 집현전관은 종신토록 학술에 종사하여 국가의 문예(文藝)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국왕의 고문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관리들이었던 것이다.

3.2. 장기근속[久任]과 순서천전(循序遷轉)

집현전관의 장기근속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 사례로 최만리(崔萬理)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⁵⁵⁾ 최만리는 세종 2년(1420) 3월 16일 집현전에 녹관을 둘 때 김돈(金墩)과 함께 박사(博士)에 임명되었다. 그는 바로 그 전해인 세종 원년(1419) 4월에 설행한 문과

합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國朝文科榜目』 卷2, 世宗朝, 同年重試榜, pp. 148-149 (영인본 『國朝文科榜目』, 太學社, 1988의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54) 『世宗實錄』 卷63, 世宗 16년 3월 20일(丁酉), 31a (3책, p. 550). “設集賢殿, 專事文翰也. 昔丁未親試, 集賢殿多中之, 予竊喜焉, 以爲此必常事文翰之故也. 近聞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臺諫政曹者頗多. 予以集賢殿爲重選, 而禮待異常, 無異臺諫, 厭事求遷, 尙且如此, 而況庶官乎. 人臣奉職之意, 果如是乎. 爾等毋有怠心, 專業學術, 期以終身.”

55) 최만리의 관직 생활과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박홍갑(2011), 「집현전 학사 최만리의 정치활동」, 『民族文化』 37, 한국고전번역원을 참조.

시험에 을과 3위, 즉 전체 3등의 성적으로 합격한 바 있다.⁵⁶⁾ 당시 그는 생원(生員) 신분이었으며, 문과 합격 후 1년 만에 집현전 박사에 발탁된 것이었다.⁵⁷⁾ 최만리는 세종 9년(1427) 3월에 실시된 문과 증시에 서⁵⁸⁾ 을과2등 1위, 즉 전체 4등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관직은 교리로 되어 있다.⁵⁹⁾ 따라서 최만리는 세종 2년 박사로 임명된 이후 7년 동안 부수찬(종6품) → 수찬(정6품) → 부교리(종5품) → 교리(정5품)로 승진했던 것이다. 3월에 증시(重試)에 합격한 최만리는 낙달이 지난 7월 23일의 실록 기사에 응교(종4품)란 직책을 띠고 등장한다.⁶⁰⁾ 증시 합격으로 특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실록 기사를 검색해 보면 최만리는 집현전의 직책이 아니라 주로 세자시강원의 직함으로 등장한다. 그는 우문학(右文學: 세종 9년 8월 7일), 좌보덕(左輔德: 세종 14년 11월 29일; 15년 11월 6일; 16년 10월 24일; 17년 6월 8일) 등을 겸직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 원년(1392) 7월 제정한 문무백관의 제도에 따르면 좌우문학(左右文學)은

- 56) 『國朝文科榜目』卷2, 世宗朝, 己亥(元年)榜(四月初一日殿試 …… 初二日出榜), 乙科三人, 生員崔萬理, p. 133.
- 57) 문과 합격 이후 집현전 박사가 되기 전까지 宗簿寺 直長(종7품)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卷7, 世宗 2년 윤1월 29일(戊戌), 24b (2책, p. 373). “一, 宗簿直長崔萬里等言, 今之工商, 布散里巷, 交驚於利, 物價騰湧. 國家旣建行廊, 以爲市廛, 自今分某匠某工而類居之, 使京市署平其物價, 違者痛徵.” 여기에서 ‘崔萬里’는 崔萬理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58) 세종은 3월 3일에 예조와 병조에 교지를 내려 문무과의 초시와 증시를 일시에 親試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하달했고, 3월 19일에 문과 증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世宗實錄』卷35, 世宗 9년 3월 3일(신묘), 20b (3책, p. 64). “傳旨禮曹兵曹曰, 文武科初重試, 欲於一時親試…….”; 『世宗實錄』卷35, 世宗 9년 3월 19일(丁未), 22b(3책, 65쪽). “取文科重試直集賢殿鄭麟趾等十二人.”]
- 59) 『國朝文科榜目』卷2, 世宗朝, <丁未(九年)>同年重試榜(十四日初場表, 十六日終場策), 乙科二等九人, 校理崔萬理, p. 148.
- 60) 『世宗實錄』卷37, 世宗 9년 7월 23일(己酉), 6b (3책, p. 83). “……加定集賢殿應教崔萬理…….”

정5품, 좌우보덕(左右輔德)은 종3품이었다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만리가 다시 집현전관의 직책을 띠고 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세종 18년(1436) 4월이다. 그는 당시 김빈(金鑣)과 함께 직제학(종3품)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⁶¹⁾ 세종 9년 7월 이후 응교에서 직전(정4품)을 거쳐 직제학으로 승진했던 것이다. 최만리가 집현전 녹관의 최고위직인 부제학에 임명된 것은 세종 20년(1438) 7월 30일이었다.⁶²⁾ 요컨대 최만리는 대략 18년 4개월 만에 정7품 박사에서 정3품 부제학으로 승진했던 것이다. 하나의 관계를 승진하는 데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만리는 세종 21년(1439) 6월에 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어 집현전을 잠시 떠나게 되었으나,⁶³⁾ 1년 만인 이듬해(1440) 7월에 집현전부제학으로 복귀하였다.⁶⁴⁾ 그의 부제학 재임은 세종 26년(1444) 2월 후반까지 확인할 수 있다.⁶⁵⁾ 최만리는 이듬해(1445) 10월 23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렇다면 그는 대부분의 관직 생활을 집현전관으로 보냈던 것이다.

집현전 관리들의 승진은 흔히 ‘이차천전’(以次遷轉), ‘순서천전’(循序遷轉), ‘차차천전’(次次遷轉) 등으로 표현된다.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61) 『世宗實錄』卷72, 世宗 18년 4월 9일(乙巳), 2b (3책, p. 670). “集賢殿直提學崔萬理·金鑣爲對讀官…….”

62) 『世宗實錄』卷82, 世宗 20년 7월 30일(壬子), 13a (4책, p. 158). “崔萬理集賢殿副提學.”

63) 『世宗實錄』卷85, 世宗 21년 6월 29일(乙巳), 47a (4책, p. 222). “崔萬理江原道觀察使.”

64) 『世宗實錄』卷90, 世宗 22년 7월 2일(壬寅), 3a (4책, p. 299).

65) 『世宗實錄』卷103, 世宗 26년 2월 20일(庚子), 19b-22a (4책, pp. 542-544).

6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國朝榜目』(한古朝26-47)에는 “辛未卒”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것이 맞다면 문종 원년(1451)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위 관직으로 승진해 간다는 뜻이다. 성종 대에 임사홍(任士洪)이 “세종조에 집현전에 박사·저작·정자의 직책을 두고, 나이가 어리고 배울만한 자를 택하여 보임해서 차차천전(次次遷轉)하여 직제학·부제학에 이르게 하였다”⁶⁷⁾고 말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집현전의 승진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종 24년(1442) 10월에 행(行)집현전직제학 유의손(柳義孫)과 직전이계전(李季甸)이 상서하여 관직을 사양하였다. 이들이 제수된 관직을 사양한 이유를 보면 당시 집현전관의 승진 과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유의손은 먼저 ‘유림의 선비’[儒林之士]는 선후의 관계를 중시하여 공손하게 사양하는 것[遜讓]을 예(禮)로 여기며, 지금의 삼관(三館)에 아직도 그러한 유풍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집현전의 ‘순서천전’은 삼관과 동일하다고 하였다.⁶⁸⁾

여기에 등장하는 ‘삼관’은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이나 성균관·교서관·승문원(承文院)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 10년(1410) 10월에 유백순(柳伯淳) 등의 올린 상소를 보면 당시에 식년시에 합격한 33인을 나누어 삼관의 권지(權知)로 삼아 6~7년이 경과한 후에 9품에 제수하고, 성균관에서는 8년, 예문관과 교서관에서는 4년 이후에 6품으로 승진시킨다고 하였다.⁶⁹⁾ 태종 17년(1417) 6월에는 예조판서 변계량의 요청에 따라 성균관·교서관·승

67) 『成宗實錄』卷60, 成宗 6년 10월 12일(戊子), 6b (9책, p. 278). “士洪對曰 ……世宗朝, 於集賢殿置博士·著作·正字之職, 擇年少可學者補之, 次次遷轉, 至於直提學·副提學…….”

68) 『世宗實錄』卷98, 世宗 24년 10월 23일(庚戌), 4b (4책, p. 441). “行集賢殿直提學柳義孫上書曰, 自古儒林之士, 莫不以先後爲重, 遜讓爲禮, 今之三館, 猶有遺風, ……竊念本殿循序遷轉, 有同三館.”

69) 『太宗實錄』卷20, 太宗 10년 10월 29일(壬戌), 25b (1책, p. 568). “且文藝必十年, 而後有成, 而以子午卯酉爲式年, 取三十三人, 分爲三館, 以權知經六七年, 始拜九品, 若成均則八年, 藝文校書則四年, 然後乃升六品, 年行三十四而中試者, 將老於三館.”

문원 삼관의 권지들을 군현에 나누어 보내 생도들을 교육하게 했던 사례가 있다.⁷⁰⁾

상서를 올린 유의손이나 이계전은 자신들의 승진이 규정과 관례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다. 먼저 유의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당시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직제학겸첨사원첨사(行直提學兼詹事院詹事)에 특배(特拜)된 상태였다. 유의손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선배인 이선제(李先齊)와 승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선제는 이미 기해년(세종 1, 1419)에 과거에 급제한, 자신보다 나이가 여덟 살이나 많은 선배였다. 유의손은 이선제가 집현전 수찬으로서 병오년(세종 8, 1426)에 회시(會試)의 참고관(參考官)으로 시험을 주관할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후 신해년(세종 13, 1431)에 사헌부 감찰이었던 유의손이 집현전 수찬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이선제는 이미 교리로 승진해 있는 상태였다. 이때부터 항상 이선제의 직위[官次: 관직의 석차]는 유의손보다 위에 있었다. 그런데 병진년(세종 18, 1436)에 유의손이 ‘문필의 작은 재주’[文墨小技]로 성은을 입어 봉정대부(奉正大夫) 집현전 직전(直殿)으로 승진하여 이선제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 유의손은 이때부터 벼슬을 사양하고자 했지만 자급(資級)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토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세종 24년에 이르러 자신이 이선제와 함께 통훈대부로 승진하였는데, 자신은 첨사원의 첨사(詹事)를 겸직하고 이선제는 동첨사(同詹事)를 겸직하게 되니, 본직은 행직제학(行直提學)으로 같지만 첨사와 동첨사에 차이가 있으니 이것이 ‘선후소장(先後少長)의 순서[先後少長之序]’에 어긋난다고 보아 자신의 겸직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⁷¹⁾

이계전의 경우도 그 내용은 유의손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계전은 세

70) 『太宗實錄』 卷33, 太宗 17년 6월 16일(庚子), 66a (2책, p. 175).

71) 『世宗實錄』 卷98, 世宗 24년 10월 23일(庚戌), 4b-5a (4책, pp. 441-442).

종 9년(1427)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다섯 살 많은 김문은 그보다 7년 전인 세종 2년(1420)에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 계전이 조산대부(朝散大夫: 종4품)로 서운관(書雲觀) 부정(副正)이 되었을 때, 집현전 응교였던 김문은 봉렬대부(奉列大夫: 정4품)로 그 관품이 더 높았다. 그런데 세종 24년에 새로운 행수법(行守法)이 시행되면서 김문은 봉렬대부로 행집현전응교(行集賢殿應敎)로 임명되고, 이계전은 조산대부로 수집현전직전(守集賢殿直殿)이 되어 이계전의 직위가 김문의 위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계전은 자신의 직위를 김문에게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다.⁷²⁾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집현전관의 ‘순서천전’(循序遷轉)의 사례

	己亥	丙午	辛亥	丙辰	세종 24년 (1442) 10월
	세종1(1419)	세종8(1426)	세종13(1431)	세종18(1436)	
李先齊	登科 ⁷³⁾	修撰 參考會試	校理		通訓大夫 行直提學 (兼)同詹事
柳義孫		登第 ⁷⁴⁾	司憲府 監察 → 修撰	奉正大夫 (정4품) 直殿	通訓大夫 行直提學 兼詹事院詹事
	庚子(1420)	丁未(1427)			세종 24년 (1442) 10월
金汶	登科 ⁷⁵⁾			奉列大夫 (정4품)	奉列大夫 行集賢殿應敎 (종4품)
李季甸		登科 ⁷⁶⁾	朝散大夫(종4품) 書雲觀 副正		朝散大夫 守集賢殿直殿 (정4품)

72) 『世宗實錄』 卷98, 世宗 24년 10월 23일(庚戌), 5a (4책, p. 442).

73) 『國朝文科榜目』 卷2, 世宗朝, 己亥(元年)榜(四月初一日殿試 …… 初二日出榜),

이계전은 상서에서 집현전에서는 “작위의 차례에 따라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 구례(舊禮)”라고 말했다.⁷⁷⁾ 요컨대 집현전의 승진 규정은 ‘순서전전’이 기본 원칙이었고, 이는 삼관의 유풍으로, 집현전의 구례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세종대의 당면 과제였던 유교적 ‘예악문물’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했다. 이에 세종은 학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이 경연(經筵)과 집현전(集賢殿)이었으니,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유교적 의례와 제도를 연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연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경연관은 겸직이라서 본직 수행에 바빠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경연을 전담하는 관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전의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정비하고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젊은 문신을 뽑아 경사(經史)를 강

同進士二十三人, 生員李先齊, p. 135.

74) 『國朝文科榜目』卷2, 世宗朝, 丙午(八年)榜(四月十三日行殿策), 同進士二十四人, 生員柳義孫, p. 144.

75) 『國朝文科榜目』卷2, 世宗朝, 庚子(二年)榜, 同進士二十三人, 幼學金汶, p. 137.

76) 『國朝文科榜目』卷2, 世宗朝, 丁未(九年)親試榜, 乙科三等十八人, 宗廟副丞李季甸, p. 147.

77) 『世宗實錄』卷98, 世宗 24년 10월 23일(庚戌), 5a (4책, p. 442). “但集賢殿以爵位之次, 循序以遷, 舊例也.”

론하게 함으로써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대의 경연에서 경사를 강론했으며, 세종은 집현전의 설치가 경연을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다. 세종 2년(1420) 3월 이조에서는 집현전에 녹관(祿官)을 두게 하자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집현전에 녹관을 설치하고 경연관을 겸임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집현전의 인원은 10명에서 32명, 20명으로 때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경연과 서연(書筵)을 담당케 하고, 문한(文翰)의 일을 전담시키고, 고금(古今)의 일을 토론하게 하고, 밤낮없이 논의하고 궁리하게 하는 관례는 유지되었다.

이를 위해 세종은 집현전에 서적을 비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사신이 왕래하는 편에 중국에서 서적을 구해 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신들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한 서적은 ‘장서각’(藏書閣)에 보관했으나, 유사 이래로 오늘날처럼 문적이 성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할 정도에 이르렀다.

설립 초기부터 집현전관에게는 경사를 강론하고 문장을 저술하는 학문 활동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집현전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했다. 세종은 집현전 관리들의 교육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세종은 집현전 관원 가운데 나이가 젊고 재주와 품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휴가를 주어 산에 들어가 글을 읽게 하고 관에서 일체의 비용을 지급했다. 그들로 하여금 경사(經史)·제자백가(諸子百家)·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 등을 폭넓게 연구하게 하여 장차 활용하고자 계획했던 것이다.

세종은 집현전관에게 학술을 권려(勸勵)하는 한편 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강구했다. 집현전에 선발되는 관리를 ‘중선’(重選)이라고 여겨 존중하였고, 그들을 예우하기를 대간과 동등하게 하였다. 집현전 설치

초기부터 집현전관을 해당 품계의 반두(班頭)로 삼은 것도 그들을 우대하기 위함이었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하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사가독서(賜暇讀書) 역시 집현전관에게 부여했던 특혜 가운데 하나였다.

집현전관의 인사 규정은 구임(久任: 장기근속)과 ‘순서천전’(循序遷轉)에 그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년 이상 집현전 관리로 복무하였던 최만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현전관은 오랜 기간 같은 관서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한 목적이 오로지 문헌(文翰)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집현전 관원들은 “오로지 학술만을 일삼아 종신토록 하기를 기약하라”[專業學術, 期以終身]고 당부했다.

집현전 관리들의 승진은 흔히 ‘이차천전’(以次遷轉), ‘순서천전’(循序遷轉), ‘차차천전’(次次遷轉) 등으로 표현된다.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상위 관직으로 승진해 간다는 뜻이다. 유의손(柳義孫)과 이계전(李季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현전관들은 “작위의 차례에 따라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을 삼관의 유풍과 집현전의 구례로 간주하였고, ‘선후소장의 순서’[先後少長之序]를 준수함으로써 ‘유림의 선비’[儒林之士]로서 선후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현전과 경연은 세종대 최고의 학문 연구 기관이 되었다. 세종은 경연에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유교경전과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역사서,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독파했다. 본문만 읽는 단순한 강독이 아니라 주석까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명실상부한 학문 연구였다. 경연에서 쌓은 학문적 성과는 세종대 예악(禮樂)을 제정하고 전장문물(典章文物)을 구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요컨대 집현전은 문과에 합격한 문반 관료 가운데 연소하고 재행(才行)이 있는 인물들을 선발하여 소속시킨 다음, 다년간의 재직 기간을 통해 경사(經史)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여러 학

술 방면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자, 국왕과 조정의 필요에 따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하는 기관이었다.

참고문헌

【자 료】

『國朝文科榜目』.

『高麗史』.

『大東野乘』.

徐居正, 『四佳集』.

成大中, 『青城雜記』.

李瀾, 『星湖僿說』.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논 저】

姜文植(1998), 「集賢殿 출신 官人の 學問觀과 政治觀」, 『韓國史論』 39, 서울
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구만옥(2016),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들녘.

손보기(1984), 『세종대왕과 집현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손유경(2018), 「세종조 집현전 학사의 교유 양상 연구 —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을 중심으로 —」, 『漢文古典研究』 37, 한국한문고전학회.

박홍갑(2011), 「집현전 학사 최만리의 정치활동」, 『民族文化』 37, 한국고전
번역원.

俞英玉(1994), 「集賢殿의 運營과 思想的 傾向 — 性理學 理解를 中心으로 —」,
『釜大史學』 18,釜山大學校 史學會.

李載喆(1973), 「集賢殿의 機能에 대한 研究」, 『人文科學』 30, 연세대학교 인
문학연구원(延世大學校 文科大學).

鄭杜熙(1983),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의 제3장 「集賢殿學士
의 社會的 背景과 政治的 成長」으로 수록.

_____(1980), 「集賢殿 學士 研究」, 『全北史學』 4, 全北大學校 史學會

崔承熙(1973), 「朝鮮初期 言官에 관한 研究 — 集賢殿官의 言官化 —」, 『韓

- 國史論』1,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國史學科.
_____(1967), 「集賢殿研究(下) — 置廢始末과 機能分析 —」, 『歷史學報』 33, 歷史學會.
_____(1966), 「集賢殿研究(上) — 置廢始末과 機能分析 —」, 『歷史學報』 32, 歷史學會.
崔鉉培先生 還甲記念 論文集刊行會 編(1954), 『崔鉉培 先生 還甲記念論文集』, 思想界社.
한충희(2007), 「朝鮮初期 集賢殿官研究」, 『朝鮮史研究』 16, 朝鮮史研究會.
韓亨周(1992), 「朝鮮 世宗代의 古制研究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36, 歷史學會.

원고 접수일: 2021년 4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0일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Jiphyeonjeon (集賢殿)

Koo, Mhan-ock*

King Sejong regarded the reorganization of Confucian rites, music, and the managerial system as a task of utmost importance. To achieve this, experts who studi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elated fields and acquired practical abilities to carry out governmental projects were required. To nurture the found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educate intellectuals, King Sejong utilized two institutions: Gyeongyeon (royal lecture) and Jiphyeonjeon (Hall of Worthies). These two, maintaining close relations with one another,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tudy of Confucian rituals and systems during the Sejong era. Sejong added a new function to Jiphyeonjeon, which was the upbringing of pupils. Jiphyeonjeon selected young and capable civil officials and had them advise the King by discussing classics and histories. The King founded salary posts in Jiphyeonjeon in 1420 and had those in the posts hold the positions of Gyeongyeongwan (royal lecturer) as well. The total number of Jiphyeonjeon officials differed, from 10, 32, or 20 at times, but the responsibility of being responsible for Gyeongyeon and Seoyeon (lecture for the Crown Prince) and for authoring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major state documents were maintained as their own by tradition.

Personnel management in Jiphyeonjeon was characterized by the systems of long-term service and promotion by seniority. The officials of Jiphyeonjeon kept the same position for many years to focus on studying their specialties. Sejong stressed that the sole purpose of Jiphyeonjeon was to author major state documents, and therefore required the scholars to concentrate on life-long study. The officials were promoted according to the order of hire, and this system was considered to be the custom of Jiphyeonjeon. They followed the rule of seniority of official employment and age, so they could respect superior Confucian scholars. Through these processes, Jiphyeonjeon and Gyeongyeon became the preeminent scholarly research institutions. In Gyeongyeon, Sejong and the officials recited Confucius texts of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as well as history books such as *Zizhitongjian* and *Xinglidaquan*. They did not stop at mere reading, but reached a level of scholarly studying by adding annotations. Intellectual achievements in Gyeongyeon served as the foundations for the rearrangement of rituals and music, and the reorganiz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Conclusively, Jiphyeonjeon can be understood as the royal institution where selected officials from the highest civil service examination, nurtured by long-term engagements in Gyeongyeon, were raised as competent intellectuals, and provided administrative counsel for state management upon the requests of the royal court.

